

1. 개정이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1778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시 반납해야 하는 저공해엔진의 부품을 정화용촉매로 명시하고,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성능유지 확인 명령의 이행기간 및 확인 명령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구체화하며,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기간을 차종별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조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후 성능유지 주체를 인증 주체와 일치시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는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 대행업무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의 등록 말소 시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의 반납 대상 부품 구체화(안 제79조의5제4항)
- 저공해엔진의 장치 및 부품별 매각 잔존가치와 반납 비용을 비교하여 잔존가치가 있는 정화용촉매만을 반납대상으로 명확화

나.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절차 구체화(안 제82조의3)

- 저공해조치 자동차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 명령의 이행기간 및 확인 명령 이행을 위한 서식 등 세부절차 신설
- 차종별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고려하여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의 면제기간 조정* 신설

* 승용자동차 2년, 승합·화물·특수자동차 1년 6개월

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부착 이후 성능유지 주체 등을 인증주체와 일치(안 제82조의5, 안 제82조의8, 안 제82조의10, 안 제82조의11)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후 성능유지 주체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 하려는 자’에서 ‘제조 또는 수입한 자’로 변경하여 인증 주체와 성능점검, 저감효율 확인검사 및 수시검사 주체를 일치시켜 법적 일관성 확보

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 대행업무 집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구체화(안 제82조의12, 안 제82조의13, 안 별표 21의3)

-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신청서식 신설
- 지정받은 사항 중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내용을 신고하도록 변경신고 기준 신설
-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준수사항 세부내용 및 관리상태 등 대행업무 집행현황 확인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

마.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36)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는 인증시험
대행기관의 위법한 대행업무 집행에 대하여 금지행위별 처분기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5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 제58조제5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및 부품”이란 정화용촉매를 말한다.

제79조의6제1호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배출가스저감장치”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을 “배출가스저감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저공해엔진”을 각각 “저공해엔진의 부품”으로 한다.

제79조의7제1호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배출가스저감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저공해엔진”을 각각 “저공해엔진 부품”으로 한다.

제82조의3의 제목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을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1항) 제1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

안전공단법」”으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구조변경검사”를 “튜닝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2제2항”을 “법 제60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4항”으로, “별지 제37호의5서식”을 “별지 제37호의6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①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명령은 별지 제37호의5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0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성능유지 확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

③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자동차 : 2년

2.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1년 6개월

제8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2 제4항”을 “법 제60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82조의5제1항 중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60조의2제6항”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법 제60조의2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을 각각 “제조 또는 수입한”으로 한다.

제82조의8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을 각각 “제조 또는 수입한”으로 한다.

제82조의10제1항 및 제5항 중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을 각각 “제조 또는 수입한”으로 한다.

제82조의11제1항 중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을 “제조 또는 수입한”으로 한다.

제82조의12 및 제82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12(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60조의5에 따른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1의3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37호의7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배치도
2. 기술인력의 확보증명서
3.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성능평가 계획서
4.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연구 및 시험 실적
5. 검사업무 내부 규정

6.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연간 인증시험의 수요 및 신청기관의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8서식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2조의13(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법 제60조의5제2항에서 “인력·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인력

2. 시설장비

②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인증시험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④ 법 제6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작성할 것

3.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4.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시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3 제3호 비고 중 “1089.5kg/cm³”를 “1089.5kg/m³”로 한다.

별표 36 제2호자목 및 차목을 각각 차목 및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60조의6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60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하계한 경우	법 제60조의6제2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법 제60조의5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한 경우	법 제60조의6제2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법 제60조의5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시험결과와 원본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의6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법 제60조의5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시험결과와 원본자료와 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의6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법 제60조의5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의6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법 제60조의5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법 제60조의6제2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8) 법 제60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60조의6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지 제36호의4서식 중 “촉매”를 “정화용촉매”로 한다.

별지 제36호의5서식 중 “촉매”를 “정화용촉매”로 한다.

별지 제37호의5서식을 별지 제37호의6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7호의5서식, 별지 제37호의7서식 및 별지 제37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의6서식(중전의 별지 제37호의5서식) 중 “시행규칙 제82조

의3제2항”을 “시행규칙 제82조의3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82조의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1의3]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제82조의12제1항 관련)

1. 시설장비

장비명	기준
가.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다.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라. 입자상물질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마. 매연측정기	1조 이상
바. 기타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1조 이상

비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 중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또는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중에 하나 이상을 보유한 자(다른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장비 및 그 부속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술인력

자격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계기술사, 차량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및 해당 기술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나목 1)에 따른 기술자격 소지자 중에 해당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2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일반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전기기사, 전자기사, 대기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2) 자동차정비기능사, 기계·자동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명 이상

비고: 제2호의 기술인력은 가목 및 나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앞쪽)

명령서 번호 제 호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성능유지 확인 명령서		
소유자	성명(상호) (운전자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명령 대상 자동차 현황	차량(관리)번호	차대번호
	최초등록일	연식
	차명	
저공해조치 현황	저감장치 구분	저감장치 종류
	저감장치 인증번호	구조변경(튜닝검사) 일자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알려드립니다.

1. 성능유지 확인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확인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성능유지 확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탈거조치 등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청 환경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검사차종		
	검사항목		
	기술인력확보현황		
	검사시설확보현황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12제1항에 따라 저감장치 등 인증 시험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배치도 1부 2. 기술인력의 확보증명서 1부 3.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성능평가 계획서 1부 4.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연구 및 시험 실적 1부 5. 검사업무 내부 규정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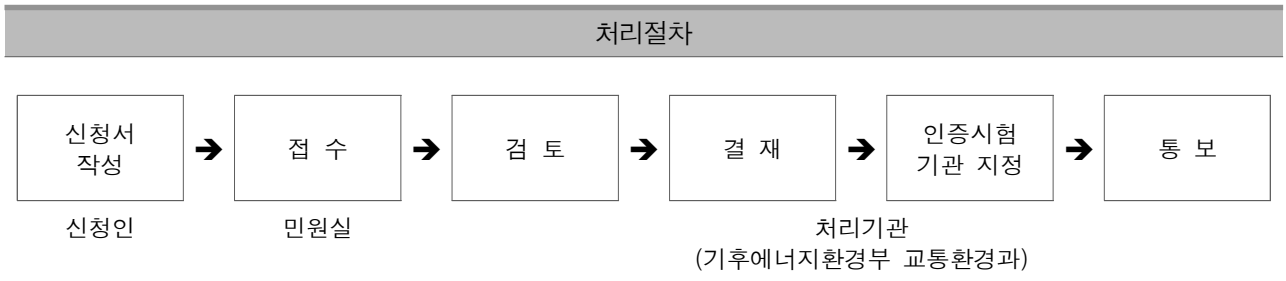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호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주 소 : (전화번호 :)

3. 소 재 지 :

4. 지정조건 :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12제2항에 따라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9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의 반납) ① · ② (생 략) ③ 삭 제 <u><신 설></u>	제79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의 반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8조제5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장치 및 부품”이란 <u>정화용촉 매를 말한다.</u>
④ (생 략) 제79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의 매각) 법 제58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9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의 매각) ----- ----- ----- ----- -----.
1. <u>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 해엔진</u> 의 저감효율이 제80조 에 따른 <u>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u> 의 저감효율에 미 달하는 경우	1. <u>배출가스저감장치</u> ----- ----- ----- <u>배출가스저감장치</u> --- ----- -----
2. 맨눈 검사 결과 배출가스저 감장치 또는 <u>저공해엔진</u> 이 훼손되어 내부 부품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	2. ----- ----- <u>저공해엔진</u> 의 부품 ----- -----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u>저공</u>	3. ----- <u>저공</u>

해엔진에 대한 재사용·재활
용 신청이 없어 향후 재사용
·재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단하
는 경우

4. (생 략)

제79조의7(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의 매각 세입의 사용) 법 제58
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쓰이는 경
비를 말한다.

1. 보증기간이 경과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클리닝, 무상점검, 콜모니터링
및 그 밖의 사후관리

2. 재사용·재활용하는 배출가
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의 성능향상을 위한 선별 및
관리

3.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회수·보
관·매각 등

4.·5. (생 략)

제82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해엔진의 부품-----

4. (현행과 같음)

제79조의7(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의 매각 세입의 사용) -----

-----.

1. ----- 배출가스
저감장치-----

2. -----
----- 저공해엔진
부품-----

--

3. -----
-- 저공해엔진 부품-----

4.·5. (현행과 같음)

제82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신 설>

<신 설>

<신 설>

①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및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 한국환경공단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주행온도 조건 및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 적정히 유지되는지 여부 등 성능을 확인받을 것

등) ①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명령은 별지 제37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0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성능유지 확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

③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자동차 : 2년

2.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1년 6개월

④ 법 제60조의2제5항-----

-----.

1. -----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

2. 개조·교체한 저공해엔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실시하는 <u>구조변경검사</u>에 합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 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u>별지 제37호의5서식</u>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 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유지 확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의4(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u>법 제60조의2 제4항</u>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2. ----- ----- ----- <u>튜닝검사</u>----- ⑤ 제4항----- ----- <u>별지 제37호의6서식</u>----- ----- ----- ----- --. ⑥ 제4항----- ----- ----- ----- ----- ----- -----. ⑦ ----- <u>제6항</u>----- ----- ----- ----- ----- -----. 제82조의4(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u>법 제60조의2제6항</u>-----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제82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매 분기마다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②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만 해당한다.

1. ~ 3. (생략)

③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점

-----.

1. ~ 3. (현행과 같음)

제82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① -----

--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법 제60조의2제8항 -----

-----.

② -----
----- 제조 또는 수입한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 제조 또는 수입한 -----

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2조의8(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① (생
략)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
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배출가스저감장
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
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검사결
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
내에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
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할 것인지 또는 재검사를
신청할 것인지를 국립환경과학
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
다.

③ (생략)

-----.

제82조의8(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

----- 제
조 또는 수입한 -----

----. -----
----- 제조 또는
수입한 -----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추가로 선정하여 제82조의 7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 ⑦ (생략)

제82조의10(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의4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때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공급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선정한다.

② ~ ④ (생략)

④ _____

제조 또는 수입한 -----

----- 제조 또는 수입한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2조의10(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_____

----- 제조 또는 수입한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결과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2조의11(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82조의10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검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⑤ -----

----- 제조 또는 수입
한 -----

-----.

제82조의11(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① -----
----- 제조 또는 수입한

-----.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의12(저감장치 등 인증시험 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60조의5에 따른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

1의3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37호의7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배치도
2. 기술인력의 확보증명서
3.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성능평가 계획서
4.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연구 및 시험 실적
5. 검사업무 내부 규정
6.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

<신 설>

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연간 인증시험의 수요 및 신청기관의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8서식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2조의13(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법 제60조의5제2항에서 “인력·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인력

2. 시설장비

②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인증시험대장을 작성·비

치해야 한다.

④ 법 제6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작성할 것

3.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4.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을 준수할 것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시 시험결과의 원본 자료, 인증시험대장,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